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결 제2008-24-075호

사 건 명 SK텔레콤(주)의 T-Ring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사건번호 200712조사046

피 심 인 SK텔레콤(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대표이사 김신배

주 문

1. 피심인은 이용자 동의없이 T-Ring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자사 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고객에게 동 서비스 자동가입을 사전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8.5cm 또는 5단×15cm 이상의 크기로 3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가. 금 액 : 600,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1,968천명으로 전체 시장의 50.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매출액은 10조 7,060억원(2007년)으로 전체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다.

< 이동전화 시장현황 >

(단위 : 천명, 십억원)

구 분	피심인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합 계
가입자수 (점유율, %)	21,968 (50.5)	13,721 (31.5)	7,808 (18.0)	43,497 (100.0)
매 출 액 (점유율, %)	10,706 (55.0)	5,492 (28.2)	3,277 (16.8)	19,475 (100.0)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나. 피심인의 T-Ring 서비스 개요 및 가입현황

(1) T-Ring 서비스 개요

T-Ring은 약 1.7초의 멜로디(땡땡 땡땡땡, 솔미 파라솔)로써 부가서비스로 출시되기 이전부터 방송 등 매체에서 피심인의 대표브랜드 T를 홍보하기 위한 Sound Identity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T-Ring 서비스는 동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발신자에게 통화 연결음(컬러링이나 일반 통화연결음)이전에 T-Ring을 들려주는 무료 부가서비스('07.10. 4.부터 서비스 개시)이다.

※ 컬러링 : 피싱인이 월 900원~3,500원의 요금을 받고 기존의 통화연결음 대신에 가입자가 신청한 음악이나 소리로 바뀌어서 들려주는 부가서비스로서, KTF는 링튠유, LGT는 필링, KT는 링고 등의 명칭으로 유사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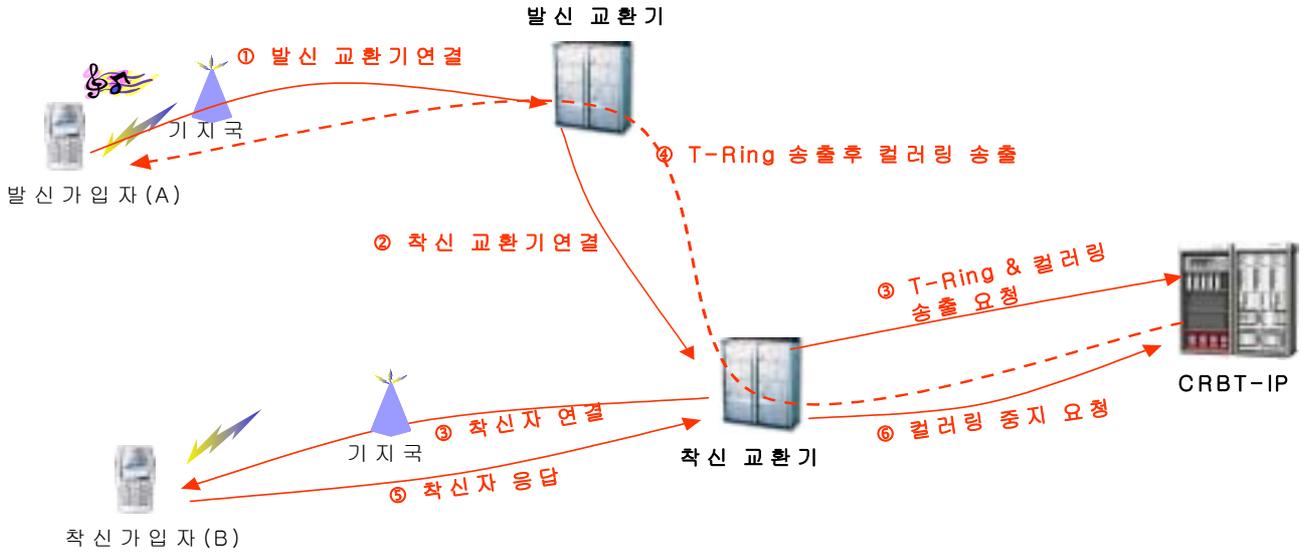
T-Ring 서비스는 부가서비스 신청방식에 의한 일반가입(일반 T-Ring 서비스), 자사고객간할인요금제 가입에 따른 자동가입(자동 T-Ring 서비스), 기존 T컬러링콘텐츠 이용자의 전환 가입 방식으로 제공된다.

※ T컬러링콘텐츠 : T-Ring 서비스 시행전 '07. 5.22~9.18. 기간동안 판매된 상품으로 T-Ring과 컬러링을 결합하여 기존 컬러링보다 100원 할인하여 판매한 상품

< 피싱인 이용약관 [별표1] 5-나. 무료부가서비스 >

종별	내 용	비 고
T-Ring 서비스	T-Ring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하는 사람에게 통화 연결음 이전에 간단한 멜로디를 들려주는 서비스	1. 멜로디는 통화연결음 이전에 제공 - 컬러링, 컬러링플러스 등 통화연결음 음원제공 서비스 가입자는 해당음원 이전에 멜로디가 제공됨 2. 기존 T컬러링콘텐츠 이용고객 및 '자사고객간 할인 요금' 가입자는 자동 적용됨(단, 가입자가 신청시 해지 가능)

(2) 호 흐름 구성도



* CRBT(컬러링) : Color Ring Back Tone

* CRBT-IP : T-Ring과 컬러링의 음원이 저장되어 있는 DB

컬러링 가입자가 T-Ring 서비스 설정시 T-Ring이 먼저 송출되고 그 후에 컬러링이 송출되므로 T-Ring이 송출되는 시간(약 1.7초)만큼 컬러링은 지연된다.

(3) 가입현황

2008년 5월말 기준 피싱인의 T-Ring 서비스 가입자는 약 656만명으로 피싱인의 이동전화 가입자 22,601,349명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 명)

구 분	신규 가입자수									총 가입자 (‘08. 5월말)
	‘07. 9.	‘07. 10.	‘07. 11.	‘07. 12.	‘08. 1.	‘08. 2.	‘08. 3.	‘08. 4.	‘08. 5.	
일반T-Ring 가입	-	838,696	582,722	448,238	412,953	287,653	281,128	210,365	269,065	3,330,820
자동T-Ring 가입	-	409,060	738,209	363,017	230,333	161,699	192,200	150,756	109,975	2,355,249
T컬러링콘텐츠 이용자의 전환 가입	875,374	-	-	-	-	-	-	-	-	875,374
합 계	875,374	1,247,756	1,320,931	811,255	643,286	449,352	473,328	361,121	379,040	6,561,443

※ 출처 : 피싱인 제출자료

※ T컬러링콘텐츠 이용자의 전환 가입 : 기존 T컬러링콘텐츠에서 T-Ring서비스로 전환 가입을 동의한 가입자

다.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용약관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3] '금지 행위 유형 및 기준' IV-2-나 및 다른 이용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제1항(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제1항 <별표3>
IV(이용자이익저해)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이용계약체결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생략
 - 나.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다. 법령이나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또한, 피심인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제1항(회사의 의무)에 의하면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이용약관 제8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2. 행위사실

가. 조사기간 및 대상

방송통신위원회(구, 통신위원회)는 '08. 1. 10 ~ 1. 23 동안 피심인이 '07. 10. 4 ~ 12. 15 기간동안 모집한 T-Ring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의 동의여부 및 자사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자의 T-Ring 서비스 자동가입에 대한 사전 고지여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현장조사 실시내역 >

T-Ring 가입유형		가입자(명)	표본수(명)	조사내용	조사방법	
①일반 T-Ring 가입	대리점	신규고객	823,703	345	가입시 동의여부	가입신청서 확인 및 전화조사
		기존고객	466,824	348	"	전화조사
		소계	1,290,527	693		
	전화(고객센터)	564,027	303	"	녹취록 확인	
	인터넷	115,007	62	"	전화조사	
	소계	1,969,561	1,058			
②자동T-Ring 가입	자사고객간할인 요금제	1,255,562	100	T-Ring 자동가입에 대한 사전고지 여부	전화조사	
③T-Ring 자동전환	T컬러링컨텐츠	1,304,047	1,304,047	T-Ring 자동전환시 동의여부	Call-Back SMS 발송내역	
합 계		4,529,170	1,304,905			

※ ①유형에 대한 표본추출 방법(권세혁 「설문조사분석방법」, 자유아카데미 2004 참조)
- 대상자 100만명 이상에 대한 신뢰수준 및 표본오차 95%±3%인 표본수 1,058명을
모집 인원수 비율별로 추출하여 표본수 선정

구 분	지점/대리점수(개)	가입자(명)	표본인원(명)	인원비율(%)
대리점	1,245	1,290,527	693	65.52
전화(고객센터)	28	564,027	303	28.64
인터넷		115,007	62	5.84
합 계	1,273	1,969,561	1,058	100.00

나. 일반 T-Ring 서비스 가입자 조사결과

대리점을 통해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한 사람 중 전산상 이동전화 신규가입일과 T-Ring 서비스 가입일이 동일한 가입자 345명에 대해서 가입신청서상 동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1명(52.5%)이 신청서상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청서상 동의하지 않은 181명 중 82명에게 직접 전화로 조사한 결과, 가입동의를 한 사람이 33명,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12명, 동의여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37명으로 조사되었다.

※ 본건 조사대상의 경우 이동전화가입신청시 T-Ring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신청서 공란에 T-Ring 서비스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하며, '07.12월 이후 발행양식부터 부가서비스 선택란에 T-Ring 서비스 항목이 추가됨

< 2007.11월 가입신청서 양식 >

신원 기재사항	약정할인 제도	<input type="radio"/> 18개월 <input type="radio"/> 24개월 *기간 내 종료까지 시 한도액 = 14,000원*이동통신요금(통신요금+서비스요금)*기간*연이자(연이자)기간	명의변경시한 적용	<input type="radio"/> 약정할인 승계여부 <small>*승계할인 적용은 공적 확인대상 고객만 해당</small>
	DATA요금제 부가서비스	<input type="radio"/> Data 안심장려제 <input type="radio"/> 원플러스클럽 <input type="radio"/> 피렉드롬 <input type="radio"/> 기타/제한권(<small>* 제한권을 중복할 경우 기재하신 부가서비스를 위해 별도 후 처리하여야 함을 표기하십시오. (N 개 이상 선택 후 무효인 항목은 없습니다.)</small>		<input type="radio"/> (30일 후 제한권 해지여부 : Y / N)
	정보/광고수신 동의	<input type="radio"/> 동의 본인은 신청서 뒷면의 정보광고 수신 동의에 대한 안내 설명을 읽고 이해내용과 제의업체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한
	T WORLD 서비스	<input type="radio"/> 신청 통화요금, 사용요금조회, 요금제변경, 문자전송요금부 등 T WORLD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small>*연간 10회 한도 초과시 과다이용을 방지 하려고 T WORL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신청에, 연 10회 한도 초과시 과다이용 방지 시 1회 한도 초과 시 제한권 해지 여부 확인합니다.</small>		제한
	통화요금 자동 결제	OK 캐쉬백포인트 <input type="radio"/> 신청 금액설정 / 월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가용 포인트 5천원 초과 경우 총 금액 포인트 한도 결제유�효기간 : 연, 연경과 후 재신청 가능		제한
	T포인트 <input type="radio"/> 신청 연도설정 / 월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가용 포인트 500원 이상 시 선택금액 한도 내에서 연액 결제유�효기간 : 취소시무효		제한	

< 2007.12월 가입신청서 양식 >

신원 기재사항	약정할인 제도	<input type="radio"/> 18개월 <input type="radio"/> 24개월 *기간 내 종료까지 시 한도액 = 14,000원*이동통신요금(통신요금+서비스요금)*기간*연이자(연이자)기간	명의변경시한 적용	<input type="radio"/> 약정할인 승계여부 <small>*승계할인 적용은 공적 확인대상 고객만 해당</small>
	부가서비스	<input type="radio"/> T-Ring <input type="radio"/> 얼리링 <input type="radio"/> 기타/제한권(<small>* 제한권을 중복할 경우 기재하신 부가서비스를 위해 별도 후 처리하여야 함을 표기하십시오. (N 개 이상 선택 후 무효인 항목은 없습니다.)</small>		<input type="radio"/> (30일 후 제한권 해지여부 : Y / N)
	정보/광고수신 동의	<input type="radio"/> 동의 본인은 신청서 뒷면의 정보광고 수신 동의에 대한 안내 설명을 읽고 이해내용과 제의업체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한
	T WORLD 서비스	<input type="radio"/> 신청 통화요금, 사용요금조회, 요금제변경, 문자전송요금부 등 T WORLD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small>*연간 10회 한도 초과시 과다이용을 방지 하려고 T WORL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신청에, 연 10회 한도 초과시 과다이용 방지 시 1회 한도 초과 시 제한권 해지 여부 확인합니다.</small>		제한
	통화요금 자동 결제	OK 캐쉬백포인트 <input type="radio"/> 신청 금액설정 / 월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가용 포인트 5천원 초과 경우 총 금액 포인트 한도 결제유�효기간 : 연, 연경과 후 재신청 가능		제한
	T포인트 <input type="radio"/> 신청 연도설정 / 월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가용 포인트 500원 이상 시 선택금액 한도 내에서 연액 결제유�효기간 : 취소시무효		제한	

※ 피심인의 '07. 11월 A대리점 단가표에는 신규 가입자는 T-Ring 미가입시 개통불가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07.12월 B대리점 단가표에는 신규 및 보상(기기변경)가입자가 T-Ring을 미가입하면 대리점 인센티브에서 5천원을 차감한다고 되어 있었음

< 2007. 11월 ○○대리점 단가표 >

소비자권장 무가서비스안내	
11월 신규,보상 당일다운및 재접속다운 반드시 80%이상 관리필수입니다	
신규. T-RING 미가입시 개통불가	
1. 안심정액제 + T-1 (T-Interactive) 가입부탁드립니다 (31일) (**)	
● 단 T-1 가입은 T-1 가입가능단말기만 가입됩니다 자세한내용은 영업사원에게 문의바람	
● 규칙:RATE점속- nate today전속>↑2회이동> VIP존>1.오늘의선물>1.최신인기안전무로	
인지여부 : => 요금제가입 및 네이트루데이,VIP존 인지 여부 모니터링 시행	
참고) 안심정액제가입고객에게 안심정액제 리플렛 및 메시지쿠폰전달요망	
● 당일 VIP존 다운로드외에 익일이후 VIP존 벨소리다운로드부탁드립니다(30일이내)	
※ 당월에는 VIP존 벨소리 다운 및 요금제 가입민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2007. 12월 ○○대리점 단가표 >

부 가 서 비 스(신 + 기)		
상품명	금액	내용
T-꺼리 요금제용 T Ring	5천원차감	신규(010/MNP) 및 보상시 미가입시 인센티브 차감 (기존 가입고객은 차감에서 제외) / 관찰 30일
TU팩 (TU약정할인+심삼,일반,다 다익선 요금제 중 택1)	2천원추가	TU서비스 신규/기존 고객 가입시 추가(익월말까지 유지조건)
	2.2만원추가	TU서비스 가입시 가입비 환납시 추가(익월10일까지유지시) (가입비 면제 고객 제외, 기존가입이력있는고객 제외)
	2.2만원차감	해당월 TU가입가능요금제대비 TU팩 가입을 85%이만시 건당 2.2만원 차감.(TU팩가입건수/TU가입건수)

대리점을 통해 T-Ring 서비스에 가입한 이동전화 기존 가입자 348명에 대해서는 전산상 가입일과 등록 담당자는 표기되어 있으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48명을 임의 추출하여 전화 조사한 결과 가입동의한 사람이 16명,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8명(사후동의 2명), 동의여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24명으로 조사되었다.

※ 사후동의 : 피싱인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시킨 후에 사후 모니터링 실시등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되었음을 알려주고 동의를 구하는 형태

전화로 T-Ring에 가입한 경우는 이용자가 피심인의 114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여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관련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가입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화가입의 경우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센터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CRM센터를 통한 가입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에서 제외

인터넷 가입의 경우 이용자가 피심인의 홈페이지에서 본인 ID와 PW를 입력하고 가입한 경우로서 전화조사로 가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가입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전화(고객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가입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이므로 모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자동 T-Ring 서비스 가입자(자사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자) 조사결과

피심인은 이용약관[별표1]에서 자사고객간할인요금제(T끼리 T내는 요금) 이용자는 T-Ring 서비스에 자동가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사고객간할인요금제 가입자 중 5개 대리점 100건을 추출하여 T-Ring 서비스가 자동가입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전화 조사한 결과

35건은 고지를 받았다고 했으며 17건은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48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본건 조사대상의 경우 이동전화가입신청서상 자사고객간할인요금제 가입시 T-Ring 서비스에 자동가입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12월 발행 신청서 양식 부터 자동가입사실 고지

3.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부가서비스인 T-Ring 서비스 가입과 관련 요금제, 부가서비스 제공조건 등 서비스 이용에 있어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고, 부가서비스의 추가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T-Ring 서비스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자의 동의 없이 T-Ring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키고

(자동 T-Ring 서비스의 경우) T-Ring 서비스에 자동 가입된다는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가입시킴으로써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여 이용자이익을 저해하였다.

※ (T컬러링컨텐츠 가입자의 경우) T-Ring 서비스 시행 전에 기간('07. 9.20~9.25.)을 정해서 T-Ring 서비스 전환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T-Ring으로 자동전환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심인은 T-Ring 서비스가 무료 부가서비스이고 자사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여 이용자이익에 부합하므로 자동 T-Ring 서비스의 경우 자유롭게 해지를 허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전적으로 편익만 제공하는 일부 무료 부가서비스(예 :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경우와 달리

T-Ring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에 따라 자신이 피심인의 가입자로 식별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통화 연결음을 통해 피심인 광고에 사용된 음원이 송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착신사업자 식별로 인한 편익을 제공받는 것도 T-Ring 서비스 가입의 주체인 착신자가 아니라 발신자라는 점에서 동 서비스가 이용자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일본 소프트뱅크의 경우 이용자 동의 없이 사업자 식별음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회사의 경우는 자사 고객간 할인요금제 출시에 따라 자사를 식별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써 통화연결음이 약간 변형된 단순 식별음을 제공하고 있으나,

피심인의 T-Ring은 자사 고객간 할인요금제 출시와 상관없이 이미 '06. 8월에 대표 브랜드 T의 징글로 개발되어 TV,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광고에 반복적으로 활용된 음원으로 소프트뱅크의 식별음과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사 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T-Ring 서비스가 자동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한 사실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사전 동의나 사전 고지 없이 이용자를 T-Ring에 가입시킨 행위는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해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이용약관에 정한 고지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에 반하여 컬러링의 송출을 지연시키는 등 이용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

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IV.2.나 및 다에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이용약관(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된 이용약관에 한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제1항(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제1항 <별표3>

IV(이용자이익침해)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이용계약체결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생략

나.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법령이나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이용약관 제8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4. 시정조치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항제6호에 의거, 이용자 동의 없이 T-Ring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자사 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고객에게 동서비스 자동가입을 사전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한다.

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항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4단×18.5cm 이상 또는 5단×15cm로 이상의 크기로 3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37조의2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해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로 1,042억원이다.

(금액단위 : 억원)

연도	2005	2006	2007	합계	평균	과징금 상한액
매출액	100,706	105,006	107,061	312,773	104,258	1,042

나. 기준금액

T-Ring 서비스는 무료 부가 서비스로서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46조 <별표5>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4조(기준금액 산정)제2항 <별표 2>에 의해 산정한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억원)

적용기준	과징금 기준금액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제4조 제2항 관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 초과~8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3 초과~6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3 이하

필수적 가중을 거친 후 과징금 금액(세부기준 제7조제1항 <별표 3>)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 억원)

구분	과징금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후 금액	가중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 초과~8 이하	7.2 초과~9.6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가중 : 기준금액 × 100분의 10 ※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가중, 위반기간 2007. 10. 8. ~ 2007. 12. 15. ○ 횡수 가중 : 기준금액 × 100분의 10 ※ (과거범위반횟수-1)×10/100],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중대한 위반행위	3 초과~6 이하	3.6 초과~7.2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3 이하	3.6 이하	

추가적 가중·감경(세부기준 제8조 <별표4>)의 경우는 위반행위의 주도, 고의·과실, 조사협조,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변화 여부 등 해당사항이 없다.

다. 과징금 결정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은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행위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이익저해행위인 점,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재발한 점, 무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인 점 및 과거 유료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경우 과징금 부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거 6억원으로 결정한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7. 결 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8. 8. 7.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시 중	(인)
	부위원장	송 도 균	(인)
	위 원	이 경 자	(인)
	위 원	이 병 기	(인)
	위 원	형 태 근	(인)